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 1. 1] [환경부령 제790호, 2018. 12. 28,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연간 100킬로그램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확인을 받은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을 신청하도록 하며, 시험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운영실적을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512호, 2018. 3. 20. 공포, 2019. 1. 1. 시행, 법률 제15584호, 2018. 4. 17. 공포, 2019. 1. 1. 시행 및 법률 제15844호, 2018. 10. 16. 공포, 2019. 1. 1. 시행)됨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신고절차를 정하고,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신고 면제확인의 변경 신청 사유를 정하며, 시험기관의 운영실적 보고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규화학물질의 신고(안 제6조의3 신설)

연간 100킬로그램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신고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규화학물질 신고통지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도록 하는 등 신규화학물질의 신고 절차를 정함.

나. 등록 또는 신고 면제확인의 변경신청(안 제7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확인을 받았으나 연구개발에 드는 기간, 제조·수입예정량 또는 연구기관이 변경된 경우, 해당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 등에는 등록 등 면제확인에 대한 변경신청을 하도록 변경신청의 사유를 정함.

다. 시험기관의 운영실적 보고(안 제30조의2 신설)

시험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시험항목, 시험물질 등 시험기관의 전년도 운영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도록 그 절차를 마련함.

라.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안 제55조의2 신설)

자료보호를 요청하였으나 보호를 요청한 사유가 없어진 자는 자료보호 해지 요청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 등 자료 보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자료 보호기관의 장은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에 따른 결과를 자료보호 해지 결과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환경부 제공>

개정문

○ 환경부령 제790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2월 28일

환경부장관 (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기존 화학물질”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 또는 기존화학물질”로, “등록신청서(영 제13조제1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말한다)”를 “등록신청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단서 중 “법 제10조제1항 단서”를 “법 제10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영”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법 제17조제2항”을 “법 제17조제3항”으로 한다.

4의2. 해당 화학물질이 현장분리중간체(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별표 3의2에 따른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통제된 조건(이하 이 호에서 “통제된 조건”이라 한다) 하에서 동일한 제조현장의 후속 공정단계에서 전량 사용·소멸되는 화학물질로서 비분리중간체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송분리중간체(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통제된 조건 하에 다른 제조현장으로 이동되어 해당 제조현장의 후속 공정단계에서 전량 사용·소멸되는 화학물질로서 비분리중간체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통제된 조건 하에서 제조·이동·사용됨을 증명하는 서류(현장분리중간체의 경우에는 제조자, 수송분리중간체의 경우 제조자·수입자 또는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제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제13조제1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또는 같은 조 제1호의2에 따른 화학물질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에 따른 서류 중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서류는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영 제13조제1호의3에 따른 기존화학물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다만,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서류는 제출할 수 있다.

가. 별표 3의3 제1호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 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 중 별표 1에서 작성을 생략하도록 한 항목에 관한 서류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

나. 별표 3의3 제2호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 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 중 별표 1에서 작성을 생략하도록 한 항목에 관한 서류

제5조제2항제2호 본문 중 “분리중간체인”을 “현장분리중간체인”으로,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분리중간체의 제조·수입자”를 “현장분리중간체의 등록신청자”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영 제13조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영 제13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7호”로 한다.

2의2. 영 제13조제2호의2에 따른 수송분리중간체인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서류. 다만, 해당 수송분리중간체의 등록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서류는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13조제1호의3에서 “화학물질의 등록 등을 위하여 제출한 자료 중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 항목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모두에서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 항목이 별표 3의3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을 말한다.

1. 별표 1에 따른 시험자료

2. 화학물질의 분류·표시에 관한 자료(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 제출한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제4항(중전의 제3항) 본문 중 “사업자등록증”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0조제4항”을 “법 제10조제6항”으로, “등록통지서”를 “화학물질 등록통지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다만,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2회까지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중 “수정·보완통지서”를 “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 수정·보완통지서”로 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등록유예기간 동안의 기존화학물질의 신고) ① 법 제10조제3항제5호에서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의 상호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등록유예기간 동안의 기존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신고하려는 자의 상호, 소재지 및 연락처
2.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의 상호, 소재지 및 연락처(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화학물질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자의 상호, 소재지 및 연락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려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유예기간 동안의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 변경신고서에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10조의2제1호 또는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2. 영 제10조의2제2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⑤ 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분기별 현황을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조의3(신규화학물질의 신고)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에 따른 서류 중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신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류는 제출할 수 있다.

1.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자료보호신청서(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려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중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법률 제11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조에 따른 유해

- 성심사 면제확인 결과 통지서(법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을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신규화학물질 신고통지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신고자료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보완사항 및 제출기간을 적어 별지 제5호의5서식의 신규화학물질 신고자료 수정·보완통지서에 따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수정·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신고인은 제출기간 이내에 수정·보완한 자료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의 제목 “(등록면제확인 신청)”을 “(등록등면제확인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면제확인”을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 확인(이하 “등록등면제확인”이라 한다)”으로, “등록면제확인신청서”를 “화학물질 등록·신고 면제확인 신청서”로,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까지 공단”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14일”을 “30일”로 한다.

- 제7조제2항 본문 중 “등록면제확인”을 “등록등면제확인”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등록면제확인 신청을 한 자가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1조제1항제2호”를 “법 제11조제1항제3호”로, “등록면제확인”을 “등록등면제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등록면제확인”을 각각 “등록등면제확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등면제확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제3항에 따라 등록등면제확인 대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화학물질 등록·신고 면제확인 신청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⑥ 영 제11조제1항제8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통제된 조건”이란 별표 3의2에 따른 통제된 조건을 말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조의2(등록등면제확인의 변경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서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11조제1항제4호의 연구개발용 화학물질로서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은 사항 중 연구개발에 드는 기간, 제조·수입 예정량 또는 연구기관이 변경된 경우
 2. 영 제11조제1항제6호의 화학물질로서 표면처리의 대상이 되는 물질 또는 그 물질의 표면을 처리하는 물질이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다른 목에 해당하는 화학물질로 변경된 경우
 3. 해당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법 제38조에 따른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해 선임된 자가 등록등면제확인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4. 해당 화학물질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등록등면제확인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등록등면제확인의 변경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화학물질 등록·신고 면제확인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7조제1항제1호의 자료 중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
3. 화학물질 등록·신고 면제확인 신청결과통지서 원본
- ③ 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화학물질 등록·신고 면제확인 신청결과통지서 뒤쪽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등록등면제확인 결과의 통지 등) ① 공단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기별로 국립환경과학원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의 신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통지 현황
2. 제7조의제2항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 변경신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청 결과 현황
-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신규화학물질의 등록면제확인 및 그 변경에 관한 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③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전년도 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변경등록”을 “변경등록 신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다만,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총 2회까지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중 “톤수범위에서 상위의 톤수 범위”를 “무게범위에서 상위의 무게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 중 “영 제9조제2호 및 영”을 “영”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변경신고의 방법)”을“(등록한 자의 변경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등록자의 명칭·소재지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날부터”를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로, “제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로 한다.

①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자의 구성(법 제38조에 따른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해 선임된 자가 등록된 경우만 해당한다)
2. 화학물질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자의 구성(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등록된 경우만 해당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신고한 자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을 신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제3호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1. 영 별표 2에 따른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가 변경되어 신고한 화학물질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신고한 화학물질의 용도 중 소비자 용도가 변경되거나 새로운 소비자 용도가 확인된 경우
3. 신고한 화학물질의 특성,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변경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화학물질의 특성 또는 유해성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확인되어 해당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가 변경된 경우
 - 나.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하여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정보가 확인된 경우

4. 해당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법 제38조에 따른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해 선임된 자가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5. 해당 화학물질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에 따른 자료 중 변경된 사항과 관련된 서류(제6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신규화학물질 신고통지서 원본
 4. 자료보호신청서(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제출받은 신규화학물질 신고통지서 뒤쪽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1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위해성 자료를 제출한 자는 본문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의 사용 비용) 법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라 등록신청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확보에 드는 비용을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제15조의3(신규화학물질의 신고자료) 법 제14조제6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법 제14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자료 중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소유한 자료를 말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3항”을 “법 제10조제6항”으로 한다.

제1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에 대하여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을 소비자가 사용하는 용도로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한 경우
2. 해당 화학물질이 고분자화합물로서 수평균분자량의 범위, 물에 녹는 정도 등의 특성이 명확히 달라 동일한 명칭 또는 식별정보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화학물질로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정보 또는 제출해야 하는 등록신청자료가 다른 경우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을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된 사항 중 신고한 자의 연락처,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용도 등에 관한 정보를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해야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제4항(중전의 제2항) 중 “등록대상기준화학물질”을 각각 “기준화학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등록대상기준화학물질”을 “기준화학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5항) 중 “제3항제2호”를 “제5항제2호”로, “등록대상기준화학물질”을 “기준화학물질”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7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대표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통지서를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협의체의 구성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협회의 장” 을 각각 “국립환경과학 원장” 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법 제10조제3항” 을 “법 제10조제6항” 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 한 자가 문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문의하 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문의하는 경우만 해당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2항” 을 “법 제17조제3항” 으로, “협회의 장” 을 “국 립환경과학원장” 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한다)

제21조제2항 중 “협회의 장” 을 “국립환경과학원장” 으로 한다.

제22조 중 “법 제17조제2항” 을 “법 제17조제3항” 으로 한다.

제2장에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 이라 한다) 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 및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과징금 납부통지서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② 영 제15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에 납부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과징 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결과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영 제15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과징금 분할납부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 호의5서식의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서에 분할납부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 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별지 제15호의6서식의 과징금 분할납부 신 청결과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부과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을 준용한다.

제23조제1항 중 “유해성심사” 를 “유해성심사(이하 “유해성심사” 라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대표자를 정하여 등록유예기간 이 내에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 중 빠른 날부터 유해성심사를 해야 한다.

1. 등록유예기간의 만료일
2. 대표자를 비롯한 협의체 구성원 모두에게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통지를 완료한 날

제23조제3항(중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단서 중 “영 제13조제1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은 6개월씩”을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 번에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등록대상기존 화학물질”을 “기존화학물질”로 한다.

제2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를 “유해성심사”로 한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유해성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1. 국내 제조·수입량
2.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
3. 해당 화학물질로 인한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피해 발생 여부

제24조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3조에 따른”을 “국립환경과학원은”으로, “법 제10조제3항”을 “법 제10조제1항·제5항”으로, “통지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고, 신규화학물질인 경우에는 그 결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법 제10조제3항”을 “법 제10조제1항·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법 제10조”를 각각 “법 제10조제1항·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4호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따라 유해성평가 결과”를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이하 “유해성 시험자료”라 한다)”로,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공단의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공단의 이사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유해성평가 결과”를 “유해성 시험자료”로,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험기관”을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시험기관의 보고) 시험기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전년도에 운영실적을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2조제2항제1호 중 “법 제10조제3항”을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으로 한다.

제33조 전단 중 “법 제10조제3항”을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 중 “법 제10조제3항”을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신고번호 및 고유번호. 다만,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등록번호를 생략할 수 있다.

제35조제2항 본문 중 “불구하고”를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해당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 또는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로서 별표 7에 따라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함량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35조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별표 7에 따라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제35조의2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별표 7에 따라 건강 유해성 및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물질

제35조제3항 중 “법 제14조에 따른 등록신청자료”를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자료 또는 신고자료”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영 제20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7에 따라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함량 기준을 말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화학물질안전정보의 제공범위에 대한 승인) ①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및 함유량 등에 대한 정보를 화학물질안전정보에 포함하지 않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 대상에 대한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1. 화학물질의 명칭 및 등록번호 등 식별정보
 2.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 승인 신청 정보 및 신청 사유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7조에 따른 정보제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및 함유량 등에 대한 정보가 화학물질안전정보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의 제외 대상에 대한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등의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 대상에 대한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승인을 받은 화학물질에 대해서 유해성 또는 위해성 정보가 새롭게 파악되어 국민의 건강상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인신청 및 승인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제2항 중 “법 제10조에 따라 등록된”을 “해당”으로 한다.

제38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유해화학물질 또는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로서 별표 7에 따라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함량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5장의 제목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를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관리”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방법 등)”을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을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으로, “유해화학물질의”를 “중점관리물질의”로, “유해화학물질별로 별지 제28호서식의 함유제품신고서”를 “중점관리물질별로 별지 제28호서식의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사업자등록증”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2항에 따른”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로 한다.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학물질의 명칭, 용도, 조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용도, 조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중점관리물질”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제외한다.

제45조제4항 중 “법 제32조”를 “법 제32조제1항”으로, “신고 또는 신고면제확인을 받은”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로 한다.

제46조제2항 본문 중 “유해화학물질”을 “중점관리물질”로 한다.

제47조 및 제4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9조제3항 본문 중 “사업자등록증”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5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된 화학물질의 명칭, 화학물질별 최대 제조·수입량의 범위,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화학물질의 용도 중 소비자 용도의 해당 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법 제42조에 따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제52조제1항제4호 중 “보고·등록의무, 등록면제확인,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의무,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표시기준 준수”를 “등록·변경등록, 신고·변경신고, 등록면제확인 및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2호의2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8.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제54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등록·변경등록”을 “등록·변경등록·신고 및 변경신고”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등록면제확인”을 “등록면제확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을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2의2. 법 제10조 및 영 제13조제2호의2에 따른 수송분리중간체의 등록과 관련된 별지 제3호서식의 수송분리중간체 관리대장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자료보호의 해지 요청) ①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자료보호 해지 요청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에 따른 결과를 별지 제38호의3서식의 자료보호 해지 결과통지서에 따라 요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시험항목란의 1) 단서 중 “물리적·화학적 특성이나”를 “상온에서 기체거나”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시험항목란의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어류급성독성 또는 물벼룩급성독성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 1)부터 3)까지의 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가. 별표 3의3 제1호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 나.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이 1톤 이상 10톤 미만인 경우(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분야	시험항목
1)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관한 시험자료	가) 물질의 상태 나) 물용해도 다) 녹는점/어는점 라) 끓는점 마) 증기압 바) 옥탄올/물 분배계수 사) 밀도 아) 입도분석
2) 인체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가) 급성경구독성. 다만, 상온에서 기체거나 용도상으로 주된 노출경로가 흡입으로 판단되는 경우 급성흡입독성을 말한다. 나) 복귀돌연변이 다) 피부 자극성/부식성 라) 피부 과민성
3) 환경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가) 어류급성독성 나) 미분해성 다) 물벼룩급성독성

비고: 2)나)의 복귀돌연변이에 관한 시험결과가 양성인 경우에는 제3호나목3) 및 같은 목 4)의 시험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제3호 중 “100톤 미만인 경우” 를 “100톤 미만인 경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시험항목란의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시험동물을 이용한 체세포 유전독성

별표 1 제3호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나목1)의 급성경피독성 또는 급성흡입독성에 관한 시험자료는 하나의 노출경로로만 사람에게 노출되는 화학물질인 경우에는 하나의 노출경로에 대한 시험자료만 제출할 수 있다.
2. 나목4)의 시험동물을 이용한 체세포 유전독성에 관한 시험자료는 제2호2)나)의 복귀돌연변이 및 나목3)의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미상에 관한 시험결과가 모두 음성인 경우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유전자변이 시험자료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별표 1 제4호 중 “1,000톤 미만인 경우” 를 “1,000톤 미만인 경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로 하고, 같은 호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별표 3의3 제2호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이 100톤 이상 1,000톤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 유해성 분야에 대하여 다목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생략하고 제2호3) 및 제3호다목에 따른 자료만을 제출할 수 있다.

별표 1 제5호 중 “1,000톤 이상인 경우” 를 “1,000톤 이상인 경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로 하고, 같은 호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별표 3의3 제2호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이 1,000톤 이상인 경우에는 환경 유해성 분야에 대하여 다목 및 제4호다목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생략하고 제2호3) 및 제3호다목의 자료만을 제출할 수 있다.

별표 1 제6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1,000톤 이상 1) 별표 3의3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1) 외의 경우	제2호에 따른 시험자료 제3호에 따른 시험자료
---	----------------------------------

별표 1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수송분리중간체인 경우의 특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송분리중간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조·수입량 구분	시험자료
가. 0.1톤 이상 1톤 미만	제1호가목에 따른 시험자료
나. 1톤 이상 10톤 미만	제2호1)에 따른 시험자료
다. 10톤 이상 100톤 미만	나목에 따른 시험자료 및 제3호가목에 따른 시험자료
라.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다목에 따른 시험자료 및 제4호가목에 따른 시험자료
마. 1,000톤 이상	라목에 따른 시험자료 및 제2호2) 및 3)에 따른 시험자료

별표 1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자료는 시험결과에 대한 심사·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충분한 정보가 기술된 것으로서 시험자료 전문(畵文: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유해성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수행되는 과정 및 절차 등을 가공하지 않고 시험결과를 기술한 것을 말한다)을 최소화하여 시험의 목적, 방법, 결과·결론을 요약한 시험요약서(원문 및 국문)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시험방법에 따라 작성된 자료여야 한다. 다만, 시험자료의 전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별표 2 제2호바목1)부터 7)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영 별표 4 제2호가목·나목의 잔류성·축적성”을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나목의 잔류성·생물축적성”으로 하고, 같은 표 제7호 중 “영 별표 4 제2호가목·나목에 따른 잔류성·축적성”을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나목의 잔류성·생물축적성”으로 한다.

별표 3의2 및 별표 3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제2호 인체 유해성 항목란의 8)을 다음과 같이 한다.

8) 시험동물을 이용한 체세포 유전독성

별표 5의 제목 중 “등록면제확인신청”을 “등록등면제확인”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등록면제확인”을 “등록등면제확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품 단위로 수입되는 시약은 해당 시약의 대표물질로 등록등면제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시약에 포함된 다른 화학물질의 성분에 관한 자료를 함께 작성해야 한다.

별표 5 제2호다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구개발에 드는 기간, 연구기관, 영 제11조제1항제4호 각 목 중 해당하는 항목 및 해당 화학물질의 용도에 관한 개략적인 설명

별표 5 제2호마목2) 중 “기본물질과 표면처리물질간”을 “표면처리의 대상이 되는 물질과 표면을 처리하는 물질 간”으로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표면처리의 대상이 되는 물질 및 표면을 처리하는 물질이 영 제11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표 5 제2호바목 중 “화학공정에”를 “공정도식도 등 화학공정에”로, “분리중간체”를 “현장분리중간체”로 한다.

별표 6 및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의 제목 중 “제23조제3항”을 “제23조제5항”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반응성, 가연성 등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으로 인한 위험성

나. 급성독성, 자극성 등에 대한 평가 결과 일시적 섭취 또는 단기간에 직접 노출로 인한 유해성

다. 반복투여독성, 발암성, 변이원성(유전독성), 생식독성 등에 대한 평가 결과 반복적으로 섭취하거나 노출로 인한 유해성

라. 수생생물독성, 육생생물독성 등에 대한 평가 결과 환경생태계에 미치는 유해성

마. 분해성, 생물농축성, 옥탄올/물 분배계수 등에 대한 평가 결과 환경으로의 일시적 또는 반복적 유출로 인한 유해성

바. 환경으로의 배출 가능성

별표 10 제2호4)부터 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23조 제2항제1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시험기관 지정취소
5)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지정받은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업무를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23조 제2항제2호	경고	시험항목 또는 시험분야 지정취소		
6) 지정받은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 외의 시험을 하거나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법 제23조 제2항제3호	시험기관 지정취소			
7)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23조 제2항제4호	경고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별표 11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기준

구분	금액
가.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1)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200,000원
2)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신고	100,000원
나.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등면제 확인	
1) 등록의 면제 확인	50,000원
2) 신고의 면제 확인	30,000원
다. 법 제12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변경등록	50,000원
2) 법 제12조제3항제3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변경신고(제1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0,000원
라. 법 제19조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승인	20,000원
마.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50,000원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5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로 하고, 같은 서식 확인사항의 등록신청자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등록형태	<input type="checkbox"/> 0.1톤 이상 1톤 미만	<input type="checkbox"/> 1톤 이상 10톤 미만	<input type="checkbox"/> 10톤 이상 100톤 미만
	<input type="checkbox"/>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input type="checkbox"/> 1,000톤 이상	
	<input type="checkbox"/> 고분자화합물	<input type="checkbox"/> 현장분리중간체	<input type="checkbox"/> 수송분리중간체
	<input type="checkbox"/>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화학물질		
	<input type="checkbox"/> 0.01톤 미만	<input type="checkbox"/> 0.01톤 이상 0.1톤 미만	<input type="checkbox"/> 0.1톤 이상 1톤 미만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5호의6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2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4호서식부터 별지 제26호서식까지,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3호서식의 제목 중 “국외 제조 생산 자에 의한” 을 “국외 제조·생산자에 의한” 으로 한다.

별지 제38호의2서식 및 별지 제38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9호서식 및 별지 제4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항 및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10 제2호4)부터 6)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3조(유해성심사를 받은 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2941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39호서식의 신고서를 말한다.

② 대통령령 제2941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 통지서
2. 해당 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40호서식의 신고통지서에 따라 신고를 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조(신규화학물질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941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를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량 보고서에 종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라 등록통지를 받은 연도부터 2018년까지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표 3의2]

현장분리중간체 및 수송분리중간체의 통제된 조건(제5조제1항제4호의2 관련)

1. 화학물질의 제조, 정제, 이송, 시료채취, 분석, 세정 및 장비 보수, 장비 또는 용기의 선적 및 하적, 폐기물의 처리 또는 정화 및 창고 보관을 포함한 해당 화학물질의 전체 주기 동안 화학물질의 유출 및 모든 인체·환경으로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통제기술 및 관리절차가 사용되어 엄격하게 통제·관리될 것
2. 훈련을 받은 담당자만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할 것
3. 세정 및 유지관리 작업의 경우, 제조공정이 시작되어 해당 화학물질이 투입되기 전에 정화 및 세척 등의 별도의 절차가 있을 것
4. 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폐기물이 생성되는 경우, 정화, 청소 및 유지보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의 유출 및 모든 인체·환경으로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통제기술 및 관리절차가 사용될 것
5.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 절차는 해당 제조현장의 운영자가 엄격하게 관리하고, 수송분리중간체의 경우에는 법 제44조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송분리중간체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기록·보존할 것

[별표 3의3]

등록신청 시 제출자료가 생략되는 기존화학물질(제5조제3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
 - 가. 별표 7 제3호에 따른 건강 유해성(이하 이 표에서 “건강 유해성”이라 한다) 및 제4호에 따른 환경 유해성(이하 이 표에서 “환경 유해성”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지 않는 물질
 - 나. 별표 7 제4호가목에 따른 수생환경 유해성 물질 항목에서 만성 구분 3 또는 만성 구분 4로만 분류되고, 그 밖의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지 않는 물질

2. 다음 각 목에 따른 구분으로만 분류되는 기존화학물질(둘 이상 분류되는 경우 및 제1호나목과 중복하여 분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밖의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지 않는 물질
 - 가. 별표 7 제3호가목에 따른 급성독성 물질 항목: 구분 4
 - 나. 별표 7 제3호나목에 따른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 항목: 피부 자극성 물질 구분 2
 - 다. 별표 7 제3호다목에 따른 심한 눈 손상 또는 눈 자극성 물질 항목: 구분 2
 - 라. 별표 7 제3호라목에 따른 호흡기 또는 피부 과민성 물질 항목: 피부 과민성 물질 구분 1
 - 마. 별표 7 제3호사목에 따른 생식독성 물질 항목: 추가 구분
 - 바. 별표 7 제3호아목에 따른 특정 표적장기(標的臟器) 독성 물질(1회 노출) 항목: 구분 3
 - 사. 별표 7 제4호나목에 따른 오존층 유해성 물질 항목: 구분 1

[별표 6]

화학물질 제조·수입량의 무게범위(제10조제1항 관련)

구분	무게범위
1.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이 1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 (영 제13조제1호의2가목에 해당하는 자만 해당한다)
2.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이 10킬로그램 이상 0.1톤 미만인 경우 (영 제13조제1호의2가목에 해당하는 자만 해당한다)
3.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이 0.1톤 미만인 경우 (구분 1 또는 구분 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이 0.1톤 이상 1톤 미만인 경우
5.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 이상 10톤 미만인 경우
6.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이 10톤 이상 100톤 미만인 경우
7.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톤 이상 1,000톤 미만인 경우
8.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0톤 이상인 경우

[별표 7]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내용(제10조제3항 관련)

1. 화학물질의 분류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구분에 따른다.
2. 물리적 위험성: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가. “폭발성 물질 또는 화약류”는 자체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주위환경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온도, 압력과 속도를 가진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액체물질이나 혼합물을 말하며, 물리적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 1부터 구분 7까지의 총 7개의 구분으로 분류한다.
 - 나. “인화성 가스”는 섭씨 20도, 표준압력 101.3킬로파스칼(kPa)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범위에 있는 가스를 말하며, 물리적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 1 또는 구분 2의 총 2개의 구분으로 분류한다.
 - 다. “인화성 에어로졸”은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나 인화성 고체 등 인화성으로 분류되는 성분을 포함하는 에어로졸을 말하며, 물리적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 1 또는 구분 2의 총 2개의 구분으로 분류한다.
 - 라. “산화성 가스”는 일반적으로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공기와 비교하여 다른 물질의 연소를 더 잘 일으키거나 연소를 돕는 가스를 말하며, 하나의 구분으로 분류한다.
 - 마. “고압가스”는 200킬로파스칼(kPa) 이상의 게이지 압력 상태로 용기에 충전되어 있는 가스 또는 액화되거나 냉동액화된 가스를 말하며, 물리적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 1부터 구분 4까지의 총 4개의 구분으로 분류한다.
 - 바. “인화성 액체”는 인화점이 섭씨 60도 이하인 액체를 말하며, 물리적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 1부터 구분 3까지의 총 3개의 구분으로 분류한다.
 - 사. “인화성 고체”는 쉽게 연소되는 고체, 마찰에 의하여 화재를 일으키거나 화재를 돕는 고체를 말하며, 물리적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 1 또는 구분 2의 총 2개의 구분으로 분류한다.
 - 아. “자기반응성(自己反應性) 물질 및 혼합물”은 열적(熱的)으로 불안정하여 산소의 공급이 없어도 강하게 발열 분해하기 쉬운 액체·고체물질이나 혼합물을 말하며, 물리적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 1부터 구분 7까지의 총 7개의 구분으로 분류한다.
 - 자. “자연발화성 액체”는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액체를 말하며, 하나의 구분으로 분류한다.

차. “자연 발화성 고체”는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고체를 말하며, 하나의 구분으로 분류한다.

카. “자기발열성(自己發熱性) 물질 및 혼합물”은 자연발화성 물질이 아니면서 주위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 공기와 반응하여 스스로 발열하는 고체·액체물질이나 혼합물을 말하며, 물리적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 1 또는 구분 2의 총 2개의 구분으로 분류한다.

타. “물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은 물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자연발화성이 되거나 인화성 가스를 위험한 수준의 양으로 발생하는 고체·액체물질이나 혼합물을 말하며, 물리적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 1부터 구분 3까지의 총 3개의 구분으로 분류한다.

파. “산화성 액체”는 그 자체로는 연소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를 돕는 액체를 말하며, 물리적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 1부터 구분 3까지의 총 3개의 구분으로 분류한다.

하. “산화성 고체”는 그 자체로는 연소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를 돕는 고체를 말하며, 물리적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 1부터 구분 3까지의 총 3개의 구분으로 분류한다.

거. “유기과산화물”은 1개 또는 2개의 수소 원자가 유기라디칼에 의하여 치환된 과산화수소의 유도체인 2개의 -O-O- 구조를 갖는 액체나 고체 유기물질을 말하며, 물리적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 1부터 구분 7까지의 총 7개의 구분으로 분류한다.

너. “금속부식성 물질”은 화학적인 작용으로 금속을 손상 또는 파괴시키는 물질이나 혼합물을 말하며, 하나의 구분으로 분류한다.

3. 건강 유해성: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급성독성 물질”은 입이나 피부를 통하여 1회 또는 24시간 이내에 수 회로 나누어 투여하거나 4시간 동안 흡입노출시켰을 때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하며, 경구·경피 또는 흡입 노출에 대해 건강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각각 구분 1부터 구분 4까지의 총 4개의 구분으로 분류한다.

나.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은 최대 4시간 동안 접촉시켰을 때 비가역적(非可逆的)인 피부손상을 일으키는 물질(피부 부식성 물질) 또는 회복 가능한 피부손상을 일으키는 물질(피부 자극성 물질)을 말하며, 건강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각각 구분 1 또는 구분 2의 총 2개의 구분으로 분류한다.

다. “심한 눈 손상 또는 눈 자극성 물질”은 눈 앞쪽 표면에 접촉시켰을 때

21일 이내에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눈 조직 손상을 일으키거나 심한 물리적 시력감퇴를 일으키는 물질(심한 눈 손상 물질) 또는 21일 이내에 완전히 회복 가능한 어떤 변화를 눈에 일으키는 물질(눈 자극성 물질)을 말하며, 건강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 1 또는 구분 2의 총 2개의 구분으로 분류한다.

라. “호흡기 또는 피부 과민성 물질”은 호흡을 통하여 노출되어 기도에 과민 반응을 일으키거나 피부 접촉을 통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하며, 호흡기 또는 피부 노출에 대해 각각 하나의 구분으로 분류한다.

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은 자손에게 유전될 수 있는 사람의 생식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하며, 건강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 1 또는 구분 2의 총 2개의 구분으로 분류한다.

바. “발암성 물질”은 암을 일으키거나 암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물질을 말하며, 건강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 1 또는 구분 2의 총 2개의 구분으로 분류한다.

사. “생식독성 물질”은 생식 기능, 생식 능력 또는 태아 발육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하며, 구분 1, 구분 2 및 추가 구분(수유에 대한 또는 수유를 통한)으로 분류한다.

아. “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1회 노출)”은 1회 노출에 의하여 특이한 비치사적(非致死的) 특정 표적장기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하며, 건강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각각 구분 1부터 구분 3까지의 총 3개의 구분으로 분류한다.

자. “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반복 노출)”은 반복 노출에 의하여 특정 표적장기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하며, 건강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 1 또는 구분 2의 총 2개의 구분으로 분류한다.

차. “흡인 유해성 물질”은 액체나 고체 화학물질이 입이나 코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구토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기관(氣管) 및 더 깊은 호흡기관(呼吸器官)으로 유입되어 화학폐렴, 다양한 폐 손상이나 사망과 같은 심각한 급성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하며, 건강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 1 또는 구분 2의 총 2개의 구분으로 분류한다.

4. 환경 유해성: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수생환경 유해성 물질”은 단기간 또는 장기간 노출에 의하여 물 속에 사는 수생생물과 수생생태계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하며, 하나의 급성 구분 및 환경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각각 구분 1부터 구분 4까지의 총 4개의 만성 구분으로 분류한다.

나. “오존층 유해성 물질”은 몬트리올 의정서의 부속서에 등재된 모든 관리정보센터

대상 물질을 말하며, 하나의 구분으로 분류한다.

5. 화학물질의 표시내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명칭: 화학물질의 이름이나 제품(상품)의 이름 등에 관한 정보
- 나. 그림문자: 유해성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 다. 신호어: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위험 또는 경고로 표시하는 문구
- 라. 유해·위험문구: 유해성을 알리는 문구
- 마. 예방조치문구: 부적절한 저장·취급 등으로 인한 유해성을 막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나타내는 문구
- 바. 공급자정보: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이름·전화번호·주소 등에 관한 정보
- 사. 국제연합번호: 유해위험물질 및 제품의 국제적 운송보호를 위하여 국제연합이 정한 물질 분류번호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kreach.m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조 [] 신규 [] 등록
[] 수입 [] 기존 [] 개별제출 화학물질 [] 변경등록 **신청서**
[] 공동제출

* 제6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6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또는 위탁한 자 포함)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청사항	①화학물질명 (출칭명)				
	고유번호 (CAS NO. 등)	순도(%)			
	분자식·구조식				
	②상품명	③확인된 불순물·부산물			
	④연간제조(수입) 예정량(톤)				
	⑤등록의 형태	<input type="checkbox"/> 0.1톤 이상 1톤 미만 <input type="checkbox"/> 1톤 이상 10톤 미만 <input type="checkbox"/> 10톤 이상 100톤 미만 <input type="checkbox"/>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input type="checkbox"/> 1,000톤 이상 <input type="checkbox"/> 고분자화합물 <input type="checkbox"/> 현장분리중간체 <input type="checkbox"/> 수송분리중간체 <input type="checkbox"/> 영 제13조제1호의3에 따라 제출자료의 일부를 생략하여 등록 <input type="checkbox"/>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화학물질 <input type="checkbox"/> 0.01톤 미만 <input type="checkbox"/> 0.01톤 이상 0.1톤 미만 <input type="checkbox"/> 0.1톤 이상 1톤 미만			
자료보호신청 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변경등록사항	⑥등록번호				
	톤수 범위				
	용도				
	유해성·위해성				
수입자 (신청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자인 경우)	⑦상호(명칭)	⑧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⑨대표자	⑩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⑪수입국
⑫수탁자 (신청인이 위탁한자인 경우)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용도	⑬용도분류체계				
	⑭구체적 용도에 대한 설명				
	⑮사용하지 말아야 할 용도				
	⑯상품의 물리적 형태 및 용도				
	⑰상품 내 함량(%)				

⑩ 분류 · 표시	분류	
	표시사항	

물리적·화학적특성	항목	⑩자료개요 · 자료의 성격 · 자료의 기본 정보 · 자료의 세부 정보 · 기타 사항	⑪시험방법 · 시험방법의 정보 · 시험물질·시험종의 정보 · 시험조건의 정보	⑫시험결과 · 시험결과값 · 결론 및 요약	⑬자료 첨부 여부
	물질의 상태				
	물용해도				
	녹는점/어는점				
	끓는점				
	증기압				
	옥탄올/물 분배계수				
	밀도				
	입도분석				
	인화성				
	폭발성				
	산화성				
	점도				
	해리상수				
	기타()				

(6쪽 중 제3쪽)

	항목	㉑자료개요	㉒시험방법	㉓시험결과	㉔자료 첨부 여부
		· 자료의 성격 · 자료의 기본 정보 · 자료의 세부 정보 · 기타 사항	· 시험방법의 정보 · 시험물질·시험종의 정보 · 시험조건의 정보	· 시험결과값 · 결론 및 요약	
인 체 유 해 성	급성 경구독성				
	급성 경피독성				
	급성 흡입독성				
	피부 자극성/부식성				
	눈 자극성/부식성				
	피부 과민성				
	복귀 돌연변이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 이상				
	시험동물을 이용한 체세포 유전독성				
	추가 유전독성 (생식세포 유전독성 등)				
	반복투여 독성(28일)				
	반복투여 독성(90일)				
	생식 및 발달독성 스크리닝				
	최기형성				
	2세대 생식독성				
	발암성				
기타()					

(6쪽 중 제4쪽)

	항목	㉑자료개요	㉒시험방법	㉓시험결과	㉔자료
		· 자료의 성격 · 자료의 기본 정보 · 자료의 세부 정보 · 기타 사항	· 시험방법의 정보 · 시험물질·시험종의 정보 · 시험조건의 정보	· 시험결과값 · 결론 및 요약	· 첨부 · 여부
환경유해성	어류 급성독성				
	물벼룩 급성독성				
	담수조류 생장저해				
	어류 만성독성				
	물벼룩 만성독성				
	육생식물 급성독성				
	육생 무척추동물 급성독성				
	육생식물 만성독성				
	육생 무척추동물 만성독성				
	활성슬러지 호흡저해				
	저서생물 만성독성				
	이분해성				
	본질적 분해성				
	pH에 따른 가수분해				
	분해산물의 확인				
	환경거동 및 동태에 대한 추가정보				
	생물 농축성				
	흡착 및 탈착				
	흡착 및 탈착에 대한 추가 정보				
	기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6쪽 중 제5쪽)

	항목	㉑자료개요	㉒시험방법	㉓시험결과	㉔자료	
		· 자료의 성격 · 자료의 기본 정보 · 자료의 세부 정보 · 기타 사항	· 시험방법의 정보 · 시험물질·시험종의 정보 · 시험조건의 정보	· 시험결과값 · 결론 및 요약	· 첨부 · 여부	
고 본 자 자 료	수평균분자량 등 관련 자료					
	구성 단량체명 및 합량자료					
	잔류 단량체명 및 합량자료					
	산·알칼리안정성 시험자료					
대 내 제 출	대 표 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구 성 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㉕등록의 형태	
공동제출자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5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조 신규 등록
 수입 기존 개별제출 화학물질의 변경등록
 공동제출 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 청 인 _____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첨부서류	제6쪽 참조	수수료 제6쪽 참조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
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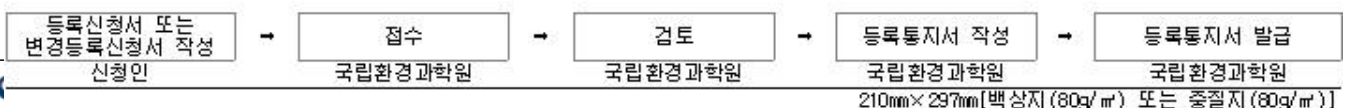
신 청 인 _____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해당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항목별 시험자료 각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제출방법에 따라 기술된 자료를 제출합니다) 2.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자료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기술된 자료를 제출합니다) 3. 화학물질의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기술된 자료를 제출합니다) 4. 현장분리중간체 및 수송분리중간체의 경우, 엄격하게 통제된 조건하에서 미송·사용됨을 확인하는 서류 5. 화학물질의 용도와 관련한 노출정보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기술된 자료를 제출합니다) 6. 다음의 서류는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등록신청자료의 생략사유 및 증명자료 각 1부 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일부를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경우: 시험항목별 시험계획서 각 1부 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별제출확인을 받은 경우: 개별제출확인서 사본 1부 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 척추동물 시험자료 사용부동의 확인소견서 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등록신청하는 경우: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 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번호를 요청하는 경우: 자료보호신청서 1부 사. 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등록신청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경우: 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 2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자료 중 변경사항이 발생한 사항과 관련된 자료 각 1부 다. 화학물질 등록통지서 원본 1부	등록수수료 200,000원 (불기입금) 100,000원 스기입금 40,000원 변경등록 수수료 50,000원 (불기입금) 26,000원 스기입금 10,000원

작성방법

- ㉠란은 화학물질명을 적습니다. 다만, 해당 화학물질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 요청하는 경우에는 총칭명을 적습니다.
- ㉡란(%) 및 ㉢란의 상품 내 함량(%)을 과학적 시험방법 등으로 정확히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소값과 최대값의 범위로 적을 수 있습니다.
- ㉣란의 상품명, ㉤란의 상품의 물리적 형태 및 용도, ㉥란의 상품 내 함량(%)은 등록신청하는 화학물질이 함유된 대표적인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적습니다.
- ㉦란의 불순물은 우연히 또는 비의도적으로 다른 화학물질에 생성되거나 존재하는 성분으로서 그 자체로 수입 또는 시장에 출시되지 않는 물질을 말하고, 부산물은 의도한 화학물질의 제조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함께 생성되는 물질로서 그 자체로 수입 또는 시장에 출시되지 않는 물질을 말합니다.
- ㉧란은 등록신청 당시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연간 제조 또는 수입량을 예상하여 적습니다.
- ㉨란에서 해당하는 항목은 모두 표시합니다.
- ㉩란은 등록통지 시 발급된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란~㉫란은 신청인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모든 수입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란에는 여러 수입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 ㉬란은 신청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 모든 수탁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 ㉭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를 적고, ㉮란은 등록신청하는 화학물질의 구체적 용도 중 주된 내용을 적습니다.
- ㉯란의 사용하지 말아야 할 용도는 확인된 경우에만 적습니다.
- ㉰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내용을 적습니다.
- ㉱란의 자료개요에는 자료의 성격(시험자료의 전문, 시험요약서, 예측자료 또는 문헌자료 등으로 구분, 주요자료 또는 참고자료의 구분 등), 자료의 기본 정보(연구코드, 유효도측 방법, 실험도 등), 자료의 세부 정보(문헌의 종류, 시험기관, 제출 시험자료의 소유권 구분 및 공개·비공개 여부) 등을 각각 적습니다.
- ㉲란의 시험방법에는 시험방법의 정보(시험방법 준수 여부, 별 제14조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 여부, 시험물질과 시험물질이 같는지 여부 등), 시험물질·시험중의 정보(시험물질의 수질등급, 시험용량법, 실험 등), 시험조건의 정보(연구기간, 시험환경조건, 매개물질, 용량, 용량법 실험 개체 수, 추가 정보 등)를 각각 적습니다.
- ㉳란의 시험결과에는 시험결과값(결과값, 단위 등), 결론 및 요약 등을 각각 적습니다.
- ㉴란의 자료첨부 여부에는 시험자료 전문을 최소화하여 요약한 시험 요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이 생략되어 시험 요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함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물리적·화학적 특성, 유해성 정보를 생산하여 가공하지 않은 시험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자료의 전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하며, 전문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란~㉶란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란의 등록의 형태에는 ㉸란의 항목 가운데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적습니다.

처리절차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앞쪽)

등록번호		화학물질 등록통지서	
제 호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구분	<input type="checkbox"/> 제조·수입자 <input type="checkbox"/>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input type="checkbox"/> 위탁한 자	
화학물질의 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화학물질 <input type="checkbox"/> 기존화학물질	
화학물질명(총칭명)			
고유번호(CAS No. 등)			
등록의 형태		<input type="checkbox"/> 0.1톤 이상 1톤 미만 <input type="checkbox"/> 1톤 이상 10톤 미만 <input type="checkbox"/> 1톤 이상 100톤 미만 <input type="checkbox"/>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input type="checkbox"/> 1,000톤 이상 <input type="checkbox"/> 고분자화합물 <input type="checkbox"/> 현장분리중간체 <input type="checkbox"/> 수송분리중간체 <input type="checkbox"/>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의3에 따라 제출자료의 일부를 생략하여 등록 <input type="checkbox"/>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화학물질 <input type="checkbox"/> 0.01톤 미만 <input type="checkbox"/> 0.01톤 이상 0.1톤 미만 <input type="checkbox"/> 0.1톤 이상 1톤 미만	
화학물질의 용도		용도분류체계	
		구체적 용도에 대한 설명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화학물질이 위와 같이 등록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div style="border: 2px solid red; display: inline-block; padding: 5px;">직인</div>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k reach.m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 수정·보완등지서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화학물질명(총칭명)				
고유번호(CAS No. 등)				
접수번호	(접수일:)	자료제출기한		
수정·보완 사항				
화학물질 식별정보				
분류 및 표시				
물리적·화학적 특성				
유해성				
위해성				
안전사용지침				
노출정보				
기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 자료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직인

첨부서류	1. 신고의 경우 가.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화학물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①란에서 해당하는 항목은 모두 표시합니다.
- ②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내용을 적습니다.
- ③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를 적습니다.
- ④란의 소비자 용도에서 사업장에서만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두 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하면 두 가지 항목 모두 표시·작성합니다. 이 경우 괄호에는 각 용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용도를 작성합니다.
-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인란 및 ⑤란의 변경신고 사항란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⑦란~⑩란은 신고인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모든 수입자의 정보를 적으며, ⑩란에는 여러 수입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 ⑩란은 신고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 모든 수탁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규화학물질 제조 신고서
 수입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고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	------	------

신고인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또는 위탁한 자 포함)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_____)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_____ / 팩스번호: _____)	

신고 사항	①화학물질명 (총칭명)			
	고유번호 (CAS No. 등)		순도(%)	
	분자식·구조식			
	②상품명	③확인된 불순물·부산물		
	④연간 제조(수입)예정량(kg)			
	⑤분류·표시	분류		
		표시사항		
	용도	⑥분류체계		
⑦범주 및 구체적 용도		<input type="checkbox"/> 산업적/전문적 용도 (_____) <input type="checkbox"/> 소비자 용도 (_____)		
자료보호신청 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⑧변경신고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수입자 (신고인이 법 제 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⑨상호(명칭)	⑩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⑪대표자	⑫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⑬수입국

⑭수탁자 (신고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제6조의3제1항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2항
 에
 따라 제조 신고
 수입 하려는 신규화학물질을 신고 변경신고 합니다.

_____년 _____월 _____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신고의 경우 가.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 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자료보호신청서(「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화학물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법률 제11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 제12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결과 통지서(「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을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에 따른 서류 중 소유하고 있는 서류 2.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신고: 100,000원 (중기업은 50,000원, 소기업은 20,000원) 변경신고: 30,000원 (중기업은 15,000원, 소기업은 6,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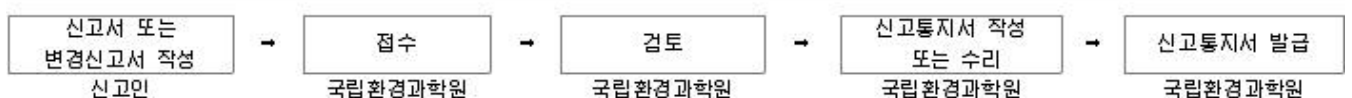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①란은 화학물질명을 적습니다. 다만, 해당 화학물질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 요청하는 경우에는 총칭명을 적습니다.
- 순도(%)를 과학적 시험방법 등으로 정확히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소값과 최대값의 범위로 적을 수 있습니다.
- ②란은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는 화학물질이 함유된 대표적인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적습니다.
- ③란의 불순물은 무연히 또는 비의도적으로 다른 화학물질에 생성되거나 존재하는 성분으로서 그 자체로 수입 또는 시장에 출시되지 않는 물질을 말하고, 부산물은 의도한 화학물질의 제조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함께 생성되는 물질로서 그 자체로 수입 또는 시장에 출시되지 않는 물질을 말합니다.
- ④란은 신고 당시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연간 제조 또는 수입량을 예상하여 적습니다.
- ⑤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사항을 적습니다.
- ⑥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를 적습니다.
- ⑦란의 소비자 용도에서 사업장에서만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두 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하면 두 가지 항목 모두 표시·작성합니다. 이 경우 괄호에는 각 용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용도를 작성합니다.
-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인란 및 ⑥란의 변경신고 사항란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⑧란~⑩란은 신고인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모든 수입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⑩란에는 여러 수입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 ⑪란은 신고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 모든 수탁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4서식]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kreach.me.go.kr)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화학물질 신고통지서

(앞쪽)

신고번호	제 호	
신고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화학물질명 (총칭명)		
고유번호 (CAS No. 등)		
화학물질의 용도	용도분류체계	
	구체적 용도에 대한 설명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규화학물질이 신고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직인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5서식]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화학물질 신고자료 수정·보완 통지서

신고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화학물질명(총칭명)		
고유번호(CAS No. 등)		
접수번호	(접수일:)	자료제출기한
수정·보완 사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3제4항에 따라 신고자료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직인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조 등록 신청서
 수입 신고 면제확인 변경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고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신청인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또는 위탁한 자 포함)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청사항	화학물질명 (출청명)				
	고유번호 (CAS No. 등)		① 상품명		
	② 용도		③ 수입(수출)국		
	자료보호신청 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④ 연간제조(수입)예정량(톤)		⑤ 금회 제조(수입)량(톤)		
	⑥ 면제확인 대상 및 사유				
	⑦ 화학물질의 분류				
변경신청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수입자 (신청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⑧ 상호(명칭)	⑨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⑩ 대표자	⑪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⑫ 수입국
⑬ 수탁자 (신청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제7조제1항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에 따라
 위와 같이 제조 등록 신고 면제확인 을 신청 변경신청 합니다.
 수입 화학물질의 신고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신청의 경우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된 자료 1부 나. 다음의 자료는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할 경우: 자료보호신청서 1부 3) 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면제확인 신청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등록면제확인 수수료 50,000원 (등기업은 26,000원, 소기업은 10,000원)
	2. 변경신청의 경우 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된 자료 중 변경사항과 관련된 자료 1부 다. 화학물질 등록면제확인 신청결과통지서 원본	신고면제확인 수수료 30,000원 (등기업은 16,000원, 소기업은 6,000원)
담당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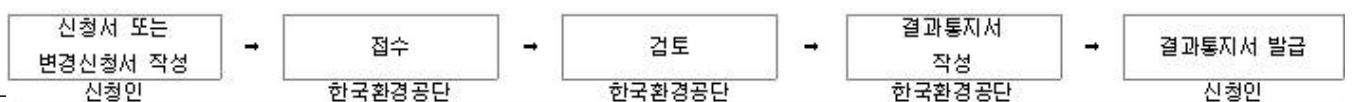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①란의 상품명은 면제확인을 신청하는 화학물질이 함유된 대표적인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적습니다.
- ②란은 해당 화학물질의 주요 용도를 적습니다.
- ③란은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 또는 국외로 전량 수출하는 경우에만 그 수입(수출)국을 적습니다.
- ④란은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을 예상하여 적습니다.
- ⑤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의 화학물질인 경우 이번 제조·수입량을 적습니다.
- ⑥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면제확인 대상 및 그 구체적 사유를 적습니다.
- ⑦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의 화학물질로서 화학물질 분류를 보유한 경우에 적습니다.
- ⑧란 ~ ⑩란은 신청자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모든 수입자의 정보를 적으며, ⑩란에는 여러 수입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 ⑪란은 신청자가 위탁한 자인 경우 모든 수탁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란 및 변경신청 사항란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확인번호		<input type="checkbox"/> 제조 화학물질 <input type="checkbox"/> 등록 <input type="checkbox"/> 수입 <input type="checkbox"/> 신고			면제확인 신청결과통지서
제 호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화학물질명(총칭명)					
고유번호(CAS No. 등)					
연간 제조(수입)량(톤)			금회 제조(수입)량 (톤)		
수입(수출)국					
면제확인 신청결과		대상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input type="checkbox"/> 사유 :			
<p>「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 따라 면제확인 결과를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직인</p>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kreach.me.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제조 등록화학물질의 변경신고서 [] 수입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신고인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또는 위탁한 자 포함)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자우편:) (전화번호:) (팩스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소재지(사업장)		
등록 사항	① 등록번호		
	화학물질명 (총칭명)		
	고유번호 (CAS No. 등)		
② 신고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 제조 등록화학물질의 변경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수입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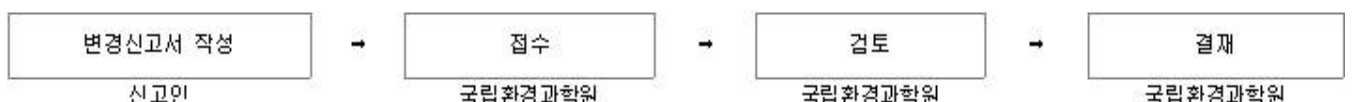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1. ①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통지서에 발급된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②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사항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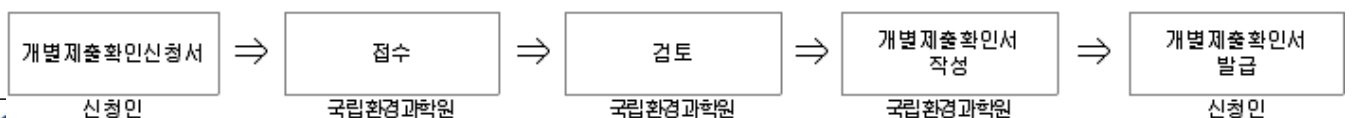


첨부서류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등록 신청 관련 개별제출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3.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4. 자료제공 동의서(「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호에 따라 개별제출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①란의 상품명은 개별제출확인을 신청하는 화학물질이 함유된 대표적인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적습니다.
- ②란은 해당 화학물질의 상품 내 주요 용도를 적습니다.
- ③란은 등록신청 개별제출 사유를 상세히 기술합니다.
- ④란 ~ ⑥란은 신청자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모든 수입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다만, ⑥란에는 모든 수입자가 수입한 총량을 적을 수 있습니다.
- ⑦란은 신청자가 위탁한 자인 경우 모든 수탁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 11호서식]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kreach.me.go.kr)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
 수입

화학물질 등록신청 개별제출확인서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화학물질명(총칭명)				
고유번호(CAS No. 등)				
상품명				
용도				
개별제출 사유				
확인결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 15조제 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8조제 3항에 따라 등록신청 개별제출 확인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직인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kreach.m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 등록 여부 문의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또는 위탁한 자 포함)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록 신청사항	①화학물질명			
	②고유번호 (CAS NO. 등)			
	③분자식·구조식	④연간제조(수입) 예정량(톤)		
	⑤등록형태	<input type="checkbox"/> 0.1톤 이상 1톤 미만 <input type="checkbox"/> 1톤 이상 10톤 미만 <input type="checkbox"/> 10톤 이상 100톤 미만 <input type="checkbox"/>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input type="checkbox"/> 1,000톤 이상 <input type="checkbox"/> 고분자화합물 <input type="checkbox"/> 현장분리중간체 <input type="checkbox"/> 수송분리중간체 <input type="checkbox"/> 영 제13조제1호의3에 따라 제출자료의 일부를 생략하여 등록 <input type="checkbox"/>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화학물질 <input type="checkbox"/> 0.01톤 미만 <input type="checkbox"/> 0.01톤 이상 0.1톤 미만 <input type="checkbox"/> 0.1톤 이상 1톤 미만		
	⑥용도분류체계			
	⑦구체적 용도에 대한 설명			
	⑧사용하지 말아야 할 용도			
	⑨상품의 물리적 형태 및 용도			
	⑩상품 내 함량(%)			
	수입자 (신청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⑪상호(명칭)	⑫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⑬대표자
수탁자 (신청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여부를 문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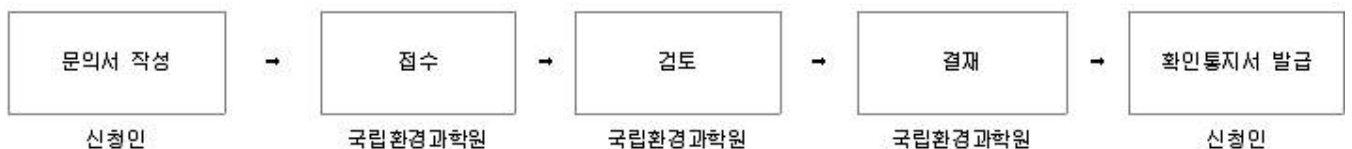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문약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문약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①란~⑩란은 등록 여부 문의 이후 등록신청을 하려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적습니다. ⑤란에서 해당하는 항목은 모두 표시합니다.
- ①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제3호 및 별표 2에 따른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를 적습니다.
- ⑦란은 등록신청하는 화학물질의 주요 용도를 적습니다.
- ⑧란은 사용하지 말아야 할 용도는 확인된 경우에만 적습니다.
- ⑨란의 상품의 물리적 형태 및 용도, ⑩란의 상품 내 함량(%)은 등록신청하는 화학물질이 함유된 대표적인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적습니다.
- ⑪란~⑬란은 신청인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모든 수입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다만, ⑬란에는 모든 수입자가 수입한 총량을 적을 수 있습니다.
- ⑭란은 신청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 모든 수탁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제조
[] 수입 **척추동물 시험자료 사용 부동의 확인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신청인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또는 위탁한 자 포함)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청사항	화학물질명 (총칭명)					
	고유번호 (CAS No. 등)					
	① 화학물질의 구분	[] 기존화학물질 [] 신규화학물질				
자료 소유자 정보	② 상호(명칭)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성명(대표자)	⑤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⑥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⑦ 해당 시험항목명						
⑧ 사용동의 거부사유						
수입자 (신청인이 법 제 38조에 따라 선임된자인 경우)	⑨ 상호(명칭)	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⑪ 대표자	⑫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⑬ 수입량(톤)	⑭ 수입국
⑮ 수탁자 (신청인이 위탁한자인 경우)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제조 척추동물 시험자료 사용부동의에 따른 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수입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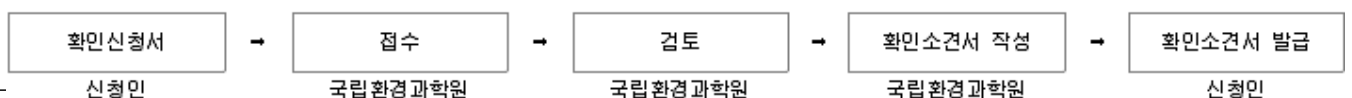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척추동물 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부동의를 입증하는 서류 2.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3.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1. ㉠란은 신청하려는 화학물질의 기존화학물질 또는 신규화학물질 여부를 적습니다.
2. ㉡란부터 ㉣란은 해당 시험자료의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적습니다.
3. ㉤란은 사용동의를 거부하는 해당 시험항목 명을 적습니다.(복수인 경우 모두 적어야 합니다)
4. ㉥란은 사용동의 거부사유를 기술합니다.
5. ㉦란부터 ㉨란은 신청자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모든 수입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다만, ㉨란에는 모든 수입자가 수입한 총량을 적을 수 있습니다.
6. ㉩란은 신청자가 위탁한 자인 경우 모든 수탁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input type="checkbox"/> 제조 <input type="checkbox"/> 수입		척추동물 시험자료 사용 부동의 확인소견서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화학물질명(총칭명)				
고유번호(CAS No. 등)				
화학물질의 구분		<input type="checkbox"/> 기존화학물질 <input type="checkbox"/> 신규화학물질		
해당 시험자료				
확인결과 조치사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척추동물 시험자료 사용부동의에 따른 확인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div style="border: 2px solid red;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직인 </div>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

과징금 납부통지서 (수납기관보관용)

발행번호			
납부자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위반일			
위반행위			
납부금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수납기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 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을 부과하오니 납부기한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유역)환경청장

직인

수납

과징금 영수통지서 (지방(유역)환경청장 보관용)

발행번호			
납부자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위반일			
위반행위			
납부금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수납기관			

위와 같이 납입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귀하

수납

과징금 납부영수증 (납부자 보관용)

발행번호			
납부자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위반일			
위반행위			
납부금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수납기관			

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수납

297mm×210mm(백상지 80g/㎡)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3서식]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청내용	당초 납부기한	
	연장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일간)	
	연장받으려는 사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유역)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납부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4서식]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결과 통지서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통지내용	당초 납부기한			
	연장한 기간	년 년	월 월	일부터 일까지(일간)
	연장 허용 또는 연장 불허용의 사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 2항에 따라 귀하의 과징금에 대하여 위와 같이 납부기한 연장을 []허용 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불허용 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유역)환경청장

직인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5서식]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당 초 부과명세	납부고지서 수령일
	납부고지서 코드번호
	부과일시
	부과금액
	납부기한

분할납부 신청 내역

분 할 납 부 신 청 금 액	합 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유역)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분할납부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6서식]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결과 통지서

신청인	상 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부과기간	납부고지 코드번호	부과금액	분할납부 금액	분할납부 기한 간격

분할납부 사항		
분할 횟수	납부기한	분할납부 금액
1 차	. . .	
2 차	. . .	
3 차	. . .	
4 차	. . .	
5 차	. . .	
6 차	. . .	
합 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조의3제 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2조의2 제 3항에 따라 귀하의 과징금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허용 []불허용 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유역)환경청장

직인

안 내 말 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조의3제 6항에 따라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

1. 분할납부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담보의 변경,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과징금 부과권자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조의3제 4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번호		유해성심사 결과통지서		
제 호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소재지(사업장)			
화학물질명 (총칭명, CAS No. 등)				
등록번호				
심사결과	유독물질 해당 여부	<input type="checkbox"/> 유독물질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유독물질인 경우 혼합물 중 함량 한계: %		
	표시내용			
	유해성 분류	그림문자와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심사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div style="border: 2px solid red;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직인</div>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kreach.me.go.kr)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전화번호:)

시행일자:

발음: 고용노동부장관

보냄: 국립환경과학원장

제목: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 통보

화학물질 유해성심사 결과통보서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소재지(사업장)			
화학물질명 (총칭명, CAS No. 등)				
등록번호				
심사결과	유독물질 해당 여부	<input type="checkbox"/> 유독물질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유독물질인 경우 혼합물 중 함량 한계: %		
	표시내용			
	유해성 분류	그림문자와 신호어	유해 · 위험문구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제 호 </div> <h2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유해성심사 자료제출명령서</h2>			
등록(변경등록)한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소재지(사업장)		
화학물질명 (총칭명, CAS No. 등)			
등록번호			
자료제출기한			
자료제출내용			
제출대상 자료명칭		사유	
<p>「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해당 자료의 제출을 명합니다.</p>			
년 월 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div style="border: 2px solid red; width: 40px; height: 4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margin: 0 auto;"> 직인 </div>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kresch.m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요청자료	①화학물질명 (총칭명)			
	고유번호 (CAS No. 등)			
	②시험자료 명칭			
	③시험자료 사용용도			
	시험자료의 사용 단위	[] 개별 사업자 [] 협의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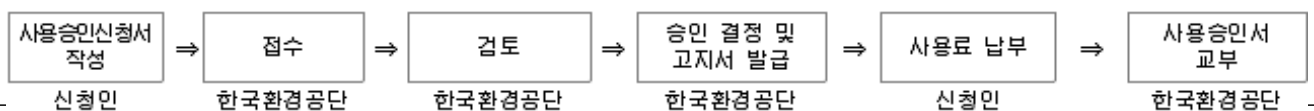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20,000원 (중기업은 10,000원, 소기업은 4,000원)
------	----	--

작성방법

1. 이 사용승인 요청서는 화학물질별로 나누어 작성한 후 요청합니다.
2. ①란은 사용승인을 요청하려는 화학물질의 명칭을 적습니다.
3. ②란은 사용승인을 요청하려는 시험자료의 명칭을 적습니다. (자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나열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4. ③란은 승인 완료 후 해당 시험자료의 용도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제 호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승인서

1. 상호(명칭) :
2.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3. 성명(대표자) :
4. 소재지(사업장) :
5. 화학물질명(총칭명) :
6. 고유번호(CAS No. 등) :
7. 승인 내용

승인 시험자료 명 칭	자료 출처				
	시험수행기관	시험일시	시험방법	용도	비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험자료의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직인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2서식]

시험기관 운영실적 보고서

제 출 자	기관명	운영책임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시험분야	
	인력현황 시험책임자 ()명, 신뢰성보증 ()명, 시험담당자 ()명, 기타 ()	

시험번호	시험항목	시험물질 (CAS No. 등)	시험 의뢰자	시험 책임자	시험 계약일	시험개시 (예정)일	시험종료 (예정)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전년도 운영실적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운영책임자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작성 방법

1. 인력현황에는 직무별 인원을 기재합니다.
2. 시험물질은 화학물질의 명칭 및 식별정보를 적어야 합니다. 다만, 화학물질의 명칭 및 식별정보가 없는 경우 시험의뢰자가 제공한 상품명, 제품명, 제품코드명 등을 적을 수 있습니다.
3. 시험책임자는 해당 시험의 시험책임자 이름을 적어야 합니다.

처리 절차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kreach.me.go.kr)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 호 <h2 style="margin: 0;">위해성평가 자료제출명령서</h2>			
등록 (변경 등록) 한 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소재지(사업장)		
화학물질명 (총칭명, CAS No. 등)			
등록번호			
자료제 출기한			
자료제 출내용			
제출대상 자료명칭		사유	
<p>「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해당 자료의 제출을 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직인 </p>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화학물질안전정보 자료

확인필

(제1쪽)

화학물질안전정보(요약)

제 공 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물 질 정 보	화학물질명(총칭명)			
	고유번호(CAS No. 등)		상품명	
	등록·신고번호 (※ 등록되지 않은 유해 화학물질의 경우 생략 가능)		용도	
	유해화학물질 등 여부	<input type="checkbox"/> 유독물질 <input type="checkbox"/> 허가물질 <input type="checkbox"/> 제한물질 <input type="checkbox"/> 금지물질 <input type="checkbox"/>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 <input type="checkbox"/> 물리적 위험성, <input type="checkbox"/> 건강 유해성, <input type="checkbox"/>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별표 7에 따라 분류되 는 화학물질		

※ 해당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함유량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가 영업비밀임을 자료에 기재해야 합니다.

안 전 정 보	항목		주요정보
	분류 표시		
	저장 보관 방법		
	취급시 주의 사항		

화학물질안전정보(정보제공 내용)

1. 물질정보	화학물질명(총칭명)					
	고유번호(CAS No. 등)		상품명			
	등록·신고번호 (※ 등록되지 않은 유해화학물질의 경우 생략 가능)					
	용도(상세기술)					
2. 물리적·화학적특성	성상		녹는점			
	끓는점		증기압			
	인화점		옥탄올/물 분배계수 (LogKow)			
	물용해도		기타			
3. 분류표시정보	구분	유해성분류		표시사항		
		항목	구분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환경 유해성					
4. 유해성정보	인체유해성	항목	독성정보			
		급성독성				
		자극성				
		과민성				
		유전독성				
		반복투여독성				
		기타				

4. 유해성 정보	환경유해성	항목	독성정보
		수생생물독성	
		육상생물독성	
		분해성	
	기타		
	물리적위험성		
5. 노출 기준	구분	작업장 허용 노출기준	
6. 취급 방법	저장 및 보관방법		
	취급시 주의사항 (사고예방법)		
	취급자에 대한 응급 조치방법		
7. 화재시 대처 방법	소화방법 및 소화시 유의사항		
	소화제 및 소화장비 (보호구 등)		
8. 누출시 방제 요령	주의 사항		
	약품, 장비 및 방제 요령		
9. 폐기 방법	폐기방법		

(제4쪽)

10. 유 해 화학 물질 등 정보	합유여부 및 규제내용	

구분		기술내용
용도기술 (공급망내 확인된 용도)		
11. 위 해성정 보	제조공정 기술 (작업조건)	사용시간 및 빈도
		단위시간 또는 작업당 사용량
		해당 용도에 대한 기타 작업조건
위해성저감조치	인체에 대한 저감조치 (노출경로 포함)	
	환경에 대한 저감조치 (노출경로 포함)	
	폐기물 관리조치	
노출정보 및 하 위사용자 지침	최적 작업조건 하의 산정 노출량	

※ 위 "위해성 정보"는 용도별 위해성 정보를 별도로 적습니다.

12. 관련 법령 규제 정보	
--	--

13. 참고 자료	
--------------------------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화학물질안전정보(위해성정보) 자료

확인필

제 공 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물 질 정 보	화학물질명(총칭명)		
	고유번호(CAS No. 등)	상품명	
	등록번호·신고번호 (※ 등록되지 않은 유해화 학물질의 경우 생략 가 능)	용도	
	유해화학물질 등 여부	<input type="checkbox"/> 유독물질 <input type="checkbox"/> 허가물질 <input type="checkbox"/> 제한물질 <input type="checkbox"/> 금지물질 <input type="checkbox"/>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 <input type="checkbox"/> 물리적 위험성, <input type="checkbox"/> 건강 유해성, <input type="checkbox"/>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별표 7에 따라 분류되 는 화학물질	

※ 해당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함유량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다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가 영업비밀임을 자료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위 해 성 정 보	구분		기술내용
		용도기술 (공급망내 확인된 용도)	
제 조 공 정 기 술 (작 업 조 건)	사용시간 및 빈도		
	단위시간 또는 작업당 사용량		
	해당 용도에 대한 기타 작업조건		
위 해 성 저 감 조 치	인체에 대한 저감조치 (노출경로 포함)		
	환경에 대한 저감조치 (노출경로 포함)		
	폐기물 관리조치		
노출정보 및 하 위사용자 지침	최적 작업조건 하의 산정 노출량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kreach.me.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자가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신고자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또는 위탁한 자 포함)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고사항	중점관리 물질명	고유번호 (CAS No. 등)	①전체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 리물질 연간 총량(톤)		②중점관리물질 분류 및 유해성정보		
	③중점관리물질 함유 제품명	제품의 용도	④제품 내 중 점관리물질의 용도(기능)	⑤제품 내 중점 관리물질의 인 체 주요 노출경 로	⑥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함량 (%)	⑦제품별 중점관리 물질 연간 총량 (톤)	
자료 보호신청 여부	[] 해당		[] 해당없음				
수입자 (신고자가 법 제38조 에 따라 선 임된 자인 경우)	⑧상호(명칭)	⑨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⑩대표자	⑪담당자 성명 및 연락 처		⑫수입량(톤)	⑬수입국
⑭수탁자 (신고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제2항에 따라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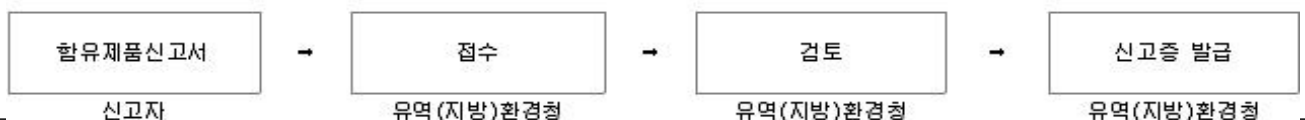
지방(유역)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제품 사용설명서 1부 2. 제품 사진 1부 3. 다음의 서류는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 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자료보호신청서 1부 다. 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 인적사항 및 사유 등의 신고한 내용	수수료 50,000원 (중기업은 25,000원, 소기업은 10,000원)
------	--	--

작성방법

1.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품 내에 함유된 개별 중점관리물질별 전체 함유량을 총합으로 산정한 결과가 1톤을 초과하고, 하나의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중량 비율이 0.1%를 초과하여 존재하는 경우 이 신고서에 따라 중점관리물질별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란은 ㉠란의 전체 제품을 합산한 값을 적습니다.
3. ㉡란은 중점관리물질의 알려진 분류 및 유해성정보를 적습니다. 필요한 경우 별도의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란은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명들을 각각 적습니다. ㉠란 ~ ㉦란은 제품별로 작성합니다.
5. ㉣란은 제품 내 중점관리물질의 용도(기능)를 적습니다.
6. ㉤란은 경구, 경피, 흡입, 기타 가운데 해당되는 노출경로를 모두 적습니다.
7. ㉥란은 하나의 제품 내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함량을 각각 적습니다.
8. ㉦란은 하나의 제품에 함유된 개별 중점관리물질의 전체 함유량을 제품별로 합산한 결과를 각각 적습니다.
9. ㉧란 ~ ㉩란은 신고자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모든 수입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다만, ㉩란에는 모든 수입자가 수입한 총량을 적을 수 있습니다.
10. ㉪란은 신고자가 위탁한 자인 경우 모든 수탁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제 호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증

1. 상호(명칭) :
2.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3. 성명(대표자) :
4. 소재지(사업장) :
5. 중점관리물질명 :
6. 고유번호(CAS No. 등) :
7. 중점관리물질 함유 제품명 :
8. 신고 내용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 방(유역) 환경 청 장

직인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 제품 양수자

제품 내 함유물질 안전정보 자료

확인필

[] 일반 소비자

제 공 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제 품 정 보	제 품 명	
	함유된 중점 관리물질명	
	고유번호(CAS No. 등)	
	함량 또는 함량범위(%)	
	사용가능용도	
	사용제한용도	

※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함유량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가 영업비밀임을 자료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안 전 사 용 정 보	항목	주요정보
	올바른 사용방법	
	올바른 사용조건	
	저장 및 보관방법	
	폐기방법	
	노출시 대처방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2서식]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kreach.m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보호 해지 요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신청인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또는 위탁한 자 포함)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화학물질명 (총칭명, CAS No. 등)							
관리번호							

신청사항	자료 보호 해지 신청 요지 및 이유	
	자료 보호 목록	
	해지 전	해지 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 45조제 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55조의 2제 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 보호의 해지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 유역(지방)환경청장 ·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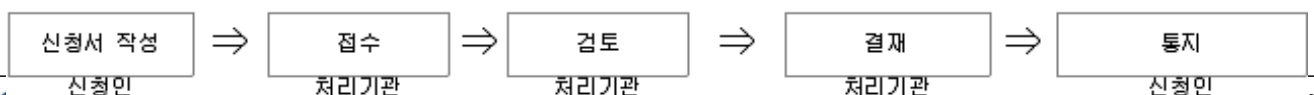
첨부서류	자료보호 수리결과통지서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관리번호란은 자료보호 수리결과통지서에 기재된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3서식]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보호 해지 결과통지서

관리번호	제 호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해지 결과	화학물질명(총칭명)	
	보호되는 자료항목	
	보호해지 되는 자료항목	자료보호 해지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보호의 해지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유역(지방)환경청장
·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직인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유해성심사를 받은 자의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신고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고사항	화학물질명 (총칭명)		
	고유번호 (CAS No. 등)		
	상품명		
	① 최근 3년간 제조 (수입)량(톤)		
	② 용도분류체계		
	구체적 용도에 대한 설명		
	사용하지 말아야 할 용도		

대통령령 제2941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 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해성심사를 받았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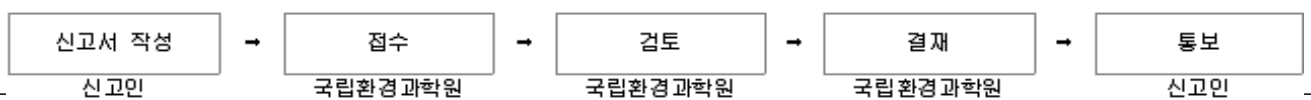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 12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 통지서 2. 해당 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 제조·수입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1. ①란은 해당 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의 제조량 또는 수입량을 적습니다.
2. ②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량 보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제출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제출인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또는 위탁한 자 포함)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 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 화번호:) (팩 스번호:)
제출사항		
화학물질명(총칭명)		
고유번호(CAS No. 등)		
① 등록번호		
② 등록 신청한 연간 제조(수입)예정량(kg)		
③ 실제 연간 제조(수입)량(kg)		

대통령령 제2941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 및 환경부령 제790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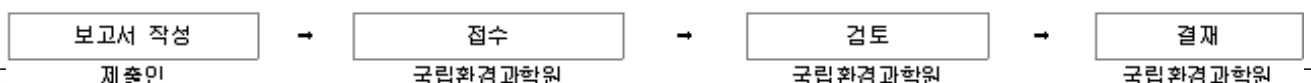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첨부서류	화학물질의 등록통지를 받은 연도부터 2018년까지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1. ①란은 화학물질 등록통지서상의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②란은 종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환경부령 제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소량 제조(수입) 신규화학물질 등록신청서에 적은 연간 제조(수입) 예정량(kg)을 적습니다.
3. ③란은 실제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